

중국경제 현안 브리핑

03-36호 / 06월 07일

중국의 대외통상마찰 현황과 중국정부의 대책

1. 개요

- 중국경제의 고성장에 따른 무역액 급증과 함께 중국과 무역상대국 간의 무역 분쟁도 급속히 늘어나고 있음.
 - 중국측 통계에 의하면, 1990년대 이래 전세계적으로 취해진 반덤핑 및 세이프가드 조치 중 평균 6~7건 가운데 1건 정도가 중국산 제품에 대한 조치였던 것으로 나타남.
 - 중국의 대외 무역분쟁 사안은 날로 증가추세에 있어, 2001년 한해 동안에만 중국은 17개 국가로부터 총 67 건의 반덤핑(55 건) 및 세이프가드조치(12 건)를 피소당했는데(2000년 대비 55% 증가), 이로 인한 중국의 수출손실액은 11.7억 달러에 달함.¹⁾
- 중국정부는 빈번한 무역분쟁이 자국의 대외무역 발전과 순조로운 산업구조조정 추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, WTO 규범과 국제관례에 부합하는 산업피해구제제도의 적극적인 운용을 통해 거시경제 안정과 국내산업 보

1) 본문에서 인용한 중국과 무역상대국 간의 무역분쟁 건수 및 피해규모에 관한 모든 수치는 중국상무부(前 경제무역위원회) 손해조사국 발표자료에 의거함.

호를 도모한다는 방침임.

- 이에 따라 중국이 WTO 회원국이 된 작년 이래 교역상대국들에 대한 중국의 반덤핑 제소 등 산업피해구제조치 발동 건수가 급증하고 있음.

2. 최근의 국제 무역분쟁의 주요 특징

□ 무역분쟁의 대상 분야 및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

- 종래는 상품무역이 주대상이었으나 최근에는 서비스무역, 지적재산권, 기술표준, 환경보호, 무역-노동 등의 분야로까지 확대됨.
- o 지역적으로는 미-유럽, 미-일 등 양국·양자간 무역분쟁 외에도 선-개도국간 및 개도국 상호간 분쟁이 빈발하는 등 전세계적인 범위로 확산됨.

□ 무역분쟁 건수의 급증

- WTO 출범 이후 2002년 6월까지 전세계 반덤핑 제소건수는 1,979 건, 반보조금 제소건수는 147 건, 세이프가드 제소건수(1995~2001년 기준)는 114 건으로, 지난 10년 동안 대폭 증가함.
- o 특히, 2002년 상반기에만 WTO에 보고된 반덤핑 최종 판결건수가 111 건(11개 회원국이 43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제소)에 달해, 2001년의 82 건에 비해 26.1%나 증가함.
- 1995년부터 지금까지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된 분쟁건수는 총 275 건에 달하며, 대표적인 사례로는 미-일간 자동차분쟁, 미-EU간 바나나분쟁, 2002년 3월 미국의 일방적 세이프가드 발동에 따른 미국과 한·중·일·EU 등 철강수출국간의 무역분쟁 등이 있음.

□ 무역분쟁의 세계경제에 대한 영향 확대

- EU의 바나나수입쿼터제 실시로 야기된 미-EU간 ‘바나나분쟁’은 바나나와 무관한 경공업, 방직, 식품 등 업종에서 EU 제품의 對美 수출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침.
- o 미국이 EU에 부과한 총 5.2억 달러의 보복관세 대상품목에는 침대시트, 커피머신, 캐시미어의류, 가방, 목욕용품, 램프, 치즈, 햄, 과자 등 EU의 對美 주요수출품목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.

□ WTO 및 국별 무역구제메커니즘의 역할 증대

- WTO 회원국들은 자국 산업 및 기업의 권익보호 수단으로서, 반덤핑, 반보조금, 세이프가드조치 등 비관세장벽을 국가별로 도입·활용하고 있으며, 그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음.
- 또한, GATT 체제하에서보다 더욱 강화된 WTO 분쟁해결메커니즘이 정착되어감에 따라 개도국의 이익 보호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됨.
- o 대표적인 예로서, WTO 출범이후 첫 번째 분쟁사안인 미-베네수엘라간 가솔린분쟁에서 WTO 분쟁해결기구인 개도국인 베네수엘라의 승소를 평결함.

3. 중국의 대외 무역분쟁 현황 및 특징

□ 근년 이래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반덤핑 제소를 당한 국가에 속함.

- 1979년 EC가 중국산 사카린 및 소금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개시한 이래 2002년 10월말까지 33개 국가에서 중국산 제품에 대해 총 544건의 반덤핑(520건) 및 세이프가드(42건) 조치를 발동함.
- o 이로 인한 중국의 무역손실액은 약 160억 달러, 피해품목은 4,000여 종에 달함.
- 2001년 한해 동안에만 중국은 17개 국가로부터 총 67 건의 대중국 반덤핑·세이프가드조치를 피소 당했는데, 이는 2000년 대비 55% 증가한 수치이며, 중국 정부는 이로 인한 수출 손실액이 약 11.7억 달러에 달한다고 주장함.

○ 그 중, 반덤핑 및 세이프가드 건수는 각각 55건과 12건으로, 2000년 대비 각각 41%와 200% 증가했음.

□ WTO 가입 이후 중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, 세이프가드조치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.

- WTO에 가입한 첫 해인 2002년 한해 동안 중국산 제품에 대한 무역제재조치는 반덤핑 42 건, 세이프가드 18 건(특별세이프가드 3건 포함) 등 총 60 건에 이르며, 금액으로는 약 10억 달러에 달함.

- 제소국가는 총 18개국이며, 대상품목은 철강, 자동차 앞유리(윈드쉴드)와 라이트 및 일부 농산물 등임.

○ 국별로는 총 14건(반덤핑 12건, 세이프가드조치 2건)을 제소한 미국이 가장 많으며, 인도가 13건(반덤핑 11건, 세이프가드조치 2건)으로 두번째를 기록함.

□ 환경보호 등 기술성 무역장벽의 수출에 대한 영향이 증대하고 있음.

- 중국산 수출품의 대부분은 노동집약형 제품으로, 환경보호, 기술표준 등과 관련된 무역장벽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음.

○ 예컨대 식품의 농약 잔류량, 도자기제품의 납 함량, 피혁의 PCP 잔류량, 담배의 유기염소 함량, 가솔린의 납 함량, 가전제품 및 완구의 안전성, 자동차 배기 표준, 오존보호 관련 제한물질, 포장물의 재활용지표, 방직품의 염료지표 등을 들 수 있음.

- 2000년 이같은 기술성 무역규제로 인한 중국 수출의 직간접 손실액은 17.6억 달러에 달하였고, 이로 인해 전체기업의 50%가 원가상승 압력에, 25%가 경영상의 위협에 직면하였음.

- 2002년 EU가 내린 중국산 動物源性 제품의 수입금지 결정은 중국에 6.23억 달러의 무역손실과 함께 94개 기업에 피해를 가져 왔음.

□ 최근 중국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 조항¹⁾을 활용한 WTO 회원국들의 대중 수입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임.

- 한국, 캐나다, 호주, 뉴질랜드, 인도 등은 이같은 대중 특별세이프가드 조항에 근거하여 관련 법규를 제정하였음.

○ 한국은 저가 중국산 공산품의 대량 수입에 대비, 2001년 12월 11일부터 2013년까지 중국산 제품에 대한 한시적인 특별세이프가드 제도를 도입키로 함.

- 최근 사례로서 미국과 인도는 2002년 8월부터 중국산 베어링 제동장치, 재봉틀 바늘, 좌석 승강장치 등 3건의 특별세이프가드조치를 발동함.

4. 향후 전망 및 중국정부의 대책

□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세계 6위의 대외무역 규모 등에 비추어 향후 중국산 제품을 둘러싼 무역분쟁의 증가는 필연적임.

- 또한, 아직은 노동집약적 제품이 대중을 이루는 중국의 수출품구조와 2015년까지 존속될 대중 특별세이프가드 조항 등도 중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, 세이프가드, 기술성 무역장벽 조치 등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.

□ 이에 중국정부는 관련 법규 정비, WTO 규범과 국제관례에 부합하는 산업피해구제제도의 적극적인 운용을 통해 거시경제 안정과 국내산업 보호를 도모하는 한편, 산업구조조정을 서두른다는 방침임.

- WTO 가입 이후 중국정부는 <중화인민공화국 반덤핑조례> <중화인민공화국 반보조금조례>, <중화인민공화국 세이프가드조치 조례>를 개정 또는 신규 제정·공포하였음.

1) 중국은 WTO 가입 과정에서 ‘사회주의시장경제’ 내의 계획경제적인 요소 잔존, 통상법규와 정책이행의 투명성 결여, 불공정 무역관행, 차별적 행정규제 등을 이유로 ‘비시장경제’로 분류됨. 이에 따라 WTO 회원국들은 향후 12~15년간 일정조건하에서 중국에 대해 MFN 대우 적용 보류, 혹은 특별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됨.

- 중국은 1997년 반덤핑 및 반보조금조례를 처음 공포한 이후 2002년까지 반덤핑 조치 22 건(제조사 1건 포함)과 세이프가드조치 1 건을 발동시켰음.
- o 특히 WTO 회원국이 된 작년 이래 중국의 반덤핑 제소 등 산업피해구제조치 발동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바, 2002년 한해 동안 반덤핑 제소건수가 전년보다 4 건 증가한 10 건을 기록함.

- 중국정부는 상기 조치들을 통해 철강, 화공, 경공업 등 관련산업 분야에서 약 200억 元의 손실을 만회하고, 산업구조조정에 필요한 시간적 여유를 확보한 것으로 자체 평가함.

□ 아울러 중국정부는 국제관례와 각국의 성공사례를 참조하여 주요 업종 및 제품에 대한 ‘산업피해 조기경보메커니즘’의 구축을 서두르고 있음.

- 현재 중국은 자동차, 철강, 화학비료 등 3개 업종에서 상무부(전 국가경무위), 업종별 협회, 省·市경무위, 기업 등이 참여하는 ‘산업피해 조기경보메커니즘’을 구축, 수입증가에 따른 국내산업에 대한 영향을 감독·관찰하여 적시에 반덤핑 조치를 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- 금후로는 이같은 조기경보시스템을 IT제품, 농산물 등에까지 확대 적용해 나아가고, 기업과 산업·업종별 협회를 중심으로 사안별로 무역마찰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메커니즘을 구축한다는 방침임.(***)

<표> 중국의 반덤핑 규제 현황

(2003년 5월 23일 현재)

No	조사 품목	조사대상국	조사개시	예비판정	최종판정
1	신문용지	한국, 미국, 캐나다	97.12	98. 7 (17.1~55.9%)	99. 6 (9~78%)
2	냉연규소강	러시아	99. 3	99.12	00. 9 (6~62%)
3	폴리에스테필름	한국	99. 4	99.12 (13~46%)	00. 8 (13~46%)
4	스테인레스스틸 강판	한국, 일본	99. 6	00. 4 (4~69%)	00.12 (8~58%)
5	아크릴산에스테르	일본, 미국, 독일	99.12	00.11	01. 6 (24~74%)
6	이염화메탄(염화메틸렌)	한국, 영국, 미국, 프랑스, 네덜란드, 독일	00.12	01. 8 (7~75%)	02. 6 (4~66%)
7	폴리스티렌	한국, 일본, 태국	01. 2	-	무피해종결
8	라이신	한국, 미국, 인도네시아	01. 6	-	무피해종결
9	폴리에스터 칩	한국	01. 8	02.10	03. 2
10	폴리에스터단섬유	한국	01. 8	02.10	03. 2
11	아크릴레이트	한국, 싱가포르, 말레이시아, 인도네시아	01.10	02.12	03. 4
12	에프시론카프로락탐	일본, 벨기에, 독일, 네덜란드, 러시아	01.12	03.1.7	-
13	아트지 (동판지)	한국, 미국, 일본, 핀란드	02.2.6	02.11	-
14	카데콜(多價 페놀)	EU	02.3.1	02.11	-
15	무수프탈산 (P.A)	한국, 일본, 인도	02.3.6	03.1.7	-
16	합성고무(SBR)	한국, 일본, 러시아	02.3.19	03.4.16	-
17	냉연강판	한국, 대만, 러시아, 우크라이나, 카자흐스탄	02.3.23	03.5.20	-
18	PVC	한국, 일본, 대만, 러시아, 미국	02.3.29	03.5.12	-
19	TDI	한국, 일본, 미국	02.5.21	-	-
20	페놀	한국, 일본, 미국, 대만	02.8.1	-	-
21	MDI	한국, 일본	02.9.20	-	-
22	에틸알콜아민	일본, 미국, 독일, 이란, 말 레이시아, 멕시코, 대만	03.5.14	-	-

주 : () 부과 관세율.

자료: 주중한국대사관.